



# 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70호 2010. 11. 26. (금)

공 고	
-----	--

- 공고 제2010-824호 [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
입법예고].....2

## 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
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일림마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-824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1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제1조     | 「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|
| 제2조     | 용어에 대한 정의   |
| 제3조     |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     |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규모(예산)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조     | 친환경무상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조     | 식재료 공급확인 및 보조금의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7·8·9조 |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제10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
-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2·13·14조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·기능 등
- 제15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6·17조 배송자의 의무, 선정 등에 관한 사항
- 제18조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
- 부칙제1·2조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고, 이전 규칙은 폐지함
- 부칙제3조 경과조치 부분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농수산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친환경무상급식 담당(전화 052-219-7680, FAX 052-219-767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조례규칙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